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. 12. 18 선고 2024가합102874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청구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바른 담당변호사 김재협, 오세준

피고주식회사 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4. 12. 18.

주 문

-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,
나.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,
다. 1,212,000,000원 및 그 중 420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23. 5. 13.부터, 792,000,000원에
대하여는 2024. 5. 13.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라. 2024. 5. 13.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6,000,000원의 비율로
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판결)

재판장판사서근찬

판사최리니

판사정성희

별지